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260호
- 다. 제출일자: 2024.10.16.
- 라. 회부일자: 2024.10.18.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과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개정함과 동시에,
- 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요금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및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 나.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의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결정 심의 근거 규정
(안 제8조제1항).
- 다. 위원회 운영 방식(상설→비상설) 변경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변경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라. 당연직 위원 변경(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담당부서의 장)
(안 제8조제2항제1호).
- 마.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 삭제 및 회의 개최 방식 변경(안 제8조제4항).
- 바. 시 소유 충전시설 점거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 사용료 징수 위탁 근거 규정
(안 제11조제2호).
- 아. 그 밖의 자구 정비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개선의견	반영사항
충전시설 점거사용료 산출기준 규정 신설	반영 (제8조제3항)
이해 충돌 발생시 해촉 규정 필요	미반영
부과징수 처리절차 및 과오납, 이의제기 등 처리규정 필요	반영 (제8조제4항)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8.16.~9.5.)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충전 완료시 자다가 새벽이라도 나가서 충전기를 빼야한다면 불편해서 전기차 구매가 떨어질 것이며, 과충전이 배터리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점거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에 반대함.

※ (미반영 사유) 충전시설 점거사용료는 과충전 방지나 화재 예방 대책이 아닌 '충전완료 후 빠른 출차 유도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 조문이 신설되는 사항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2조제11호	·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정의 신설 -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 -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결정 사항 심의 근거 규정 마련 ·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 및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변경
안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원 변경(환경·에너지 업무 관련 실·본부·국장→담당 부서장)
안 제8조제4항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회의 소집 및 개최 규정 변경
안 제9조	· 시 소유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 점거 사용료 징수 위탁 근거

나. 검토의견

1)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관련

- 안 제2조제11호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정의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를 의미하며, 안 제9조는 시장이 시 소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최대 분당 500원¹⁾의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1)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함

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개정안
<p>제9조(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따른다.</p>

- 충전시설 충전 후, 미 출차 등에 따른 충전 방해 행위²⁾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제16조에 따라 이미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9조와 같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시는 충전 완료 후 단시간 내 출차를 유도하여 더 많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5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2) 일정 시간(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후 미 출차 시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6조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부과는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고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만, 현재 부과하고 있는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에 미뤄 이중 부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³⁾되고 있음.

또한,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일반 시민이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최초~최종) 이상 또는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형태이나 재출입 등에 대해 사진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부과 규정 도입에 앞서 현행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상설→비상설)

- 안 제8조는 현 위원회 운영 현황⁴⁾에 미뤄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유연성 증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위원회 역할에 충전시설 점거사용료 산출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서울시, 과충전 전기차에 ‘10만원’ 부과…‘과잉대응 논란’”(뉴스토마토, ‘24.8.19.)

4) '21년 2회, '22년 1회, '23년 1회, '24년 미개최